

통일과 법

안춘수

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과 사회

법학 입문서를 보면 종종 로빈슨 크루소가 등장한다. 법과 로빈슨 크루소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는 혼자 사는 사람의 전형으로서 법과 역설적인 인연을 맺고 있는 것이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법이 필요없다. 그가 무슨 짓을 하든 그의 행위에 의하여 영향받을 다른 사람이 없고, 따라서 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관계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법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행위를 규율하는 규범이다. 그리고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언제나 이러한 행위 규범이 존재하였고 또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 사회에서 사람의 행위가 법에 의해서만 규율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사교상의 예절이나 도덕도 행위를 규율하지만 우리는 이를 법이라 하지 않는다. 여기서 법 규범과 다른 사회 규범이 어떻게 다르고 그 관

계는 어떠한지가 문제되고 아직도 그 구별이 완전히 해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보통 국가 등 조직된 외부적 힘에 의하여 그 준수가 강제되는 규범만을 법 규범이라 한다.

법 규범은 행위를 법적 당위의 관점에서 규율한다. 즉, 사람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정하여 놓고(명령·금지), 이러한 법적 요구에 비추어 사회 구성원의 행위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사인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 행사의 주체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즉, 국가 권력의 행사 역시 법 규범에 의해서만 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이다. 한 사회에 존재하는 이러한 법 규범은 일정한 구조와 패턴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체계(법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오늘날 법은 이러한 규범의 총체적 체계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은 사회적 산물이며 법체계는 보다 큰 체계라 할 수 있는 사회체계의 일부

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법체계에는 그것이 속하고 있는 사회체계가 반영되어 있다. 즉, 한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관, 부의 분배 방식, 생활 양식 등 기본 방향이 설정되면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들이 마련된다(기본 방향의 실질적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 설정 과정과 법제도 형성의 메커니즘도 다양하며, 이 역시 법체계와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사회는 다시 이렇게 형성된 법체계에 의하여 규율된다. 따라서 법과 사회의 관계는 사회가 법에 의하여 유지된다는 말로 바꾸어 표현될 수도 있다. 확립된 한 법체계의 기본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그 사회는 기존의 원리에 따라 기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법체계가 바뀌면 사회를 움직이는 원리도 달라지고, 사회 구조가 변하면 법체계는 그에 맞게 변경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사회와 법은 무엇이 먼저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호 관련 속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변모해간다. 법이 사회적 산물이지만 동시에 사회 개혁적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처럼 전체 사회체계가 가운데 법체계가 갖는 기능은 매우 크다.

북한의 법체계

남북이 정치적으로 갈라지면서 한반도에는 두 개의 법체계가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두 정치적 단위에서 취하고 있는 사회체계의 차이가 큰 만큼 법체계의 차이도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남한의 법체계는 잊혀 놓고 북한 법체계의 특징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법체계를 계통별로 분류한 것을 法系라 하는데, 북한의 법은 이른바 사회주의법계에 속한다. 사회주의법계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국가와 함께 법도 생산 관계(하부 구조)의 반영인 상부 구조에 불과하다. 즉, 법은 경제 관계의 종속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독립적 제도가 아니라 지배 계층의 생산 수단에 대한 통제를 확보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이다. 이에 따르면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하면 법은 유산 지배 계급과 더불어 사라질 존재이다. 그러나 레닌은 과도기인 사회주의 단계에서는 여전히 법이 필요하며, 더욱이 다수 노동자가 소수 자본가를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용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법계가 다른 법계와 확연히 구별되는 점은 법이 전적으

로 그 정치적 기능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이다. 즉, 정치가 일정한 방향을 정립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국가 목표로 정하면, 법은 무조건 이를 추종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법계에서 법은 정치의 도구일 뿐이다. 이러한 마르크스·레닌의 법사상은 종주국 구소련에 이어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서 채용되었는데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사회주의법계의 또다른 특징은 공·사법의 구별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영미법계 역시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지 않으며, 대륙법계에서도 사회 및 국가 기능의 변화와 더불어 공·사법의 구별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그 원인과 양상에 있어 사회주의법계와는 다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사회주의체제 하에서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는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개인 사이의 소유권 이전을 규율할 규범이 필요없다. 그리고 경제는 국가 경제 계획에 의하여 통제되므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 하에서 개인간의 거래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 원리인 사적 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인 계약도, 국가 경제 계획을 집행하고 경제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 내지는 절차로 이해되고 있다. 이처럼 모든 법은 우리의 공법적 원리 및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심지어 가족법조차도 사회보장법적

성질이 강하여 가족 관계에 국가가 폭넓게 관여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강력하고 전능한 국가를 강조한 스탈린 법 사상의 영향도 강하게 받았던 것으로 평가되는데, 여기서 유래된 특징으로 법에 사회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공산 사회에 적합한 인간상을 갖도록 국민을 개조하는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북한 법의 변화와 법 의식

법은 변화하는 사회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북한도 피할 수 없는 법 현상인 모양이다. 북한의 법이 기본적으로 아직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틀을 고수하고는 있지만, 부분적으로 사회주의법계의 전통과는 궤를 달리하는 특별법이 근래에 계속 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전형적인 예가 제한된 범위지만 생산재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나아가 그 양도와 상속까지 인정하며, 계약을 자본재의 투자 등 두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규율하는 본격적인 법제도로서 시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멀리서 구소련 등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및 중국의 변화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북한의 심각한 경제 사정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

다. 중국 등 전통적인 북한의 우방국이 제공하는 형제애적 원조만으로는 현재의 경제적 난국을 헤쳐나가기에 태부족이며, 자본주의 국가와의 본격적인 거래, 특히 서방 기업의 북한내 투자가 절실하다. 이에 응하여 이윤을 좇아 움직이는 서방 기업과의 거래를 가능케 할 여건을 만드는 작업의 일환으로, 자유무역지대의 설정과 함께 이질적인 법제도를 도입 내지는 인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나타난 북한 법의 변화는 대외 거래 및 외국인 투자에 관련된 특별법에 국한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변화의 방향으로 전체 법체계의 기본 구조를 바꿀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본다. 이 경우 국제 거래 분야 및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를 대상으로 하는 법과 기타 지역에서 적용되는 다른 원리의 법이 병존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결과되는 경제·문화 활동의 차이는 내부적 갈등뿐 아니라 다시 국제 거래의 법적 안전성을 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북한 당국이 여하히 해결하느냐는 부분적 개방의 성공 여부와 체제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실정법과 사회 구성원의 법 의식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법학자에게 몹시 당혹스러운 것이다. 필자는 최근 남북 경제

교류의 법적 여건을 조사한 바 있다. 그때 북한과의 거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북한에서의 실제적 법 운용과 법 의식을 알아보려 하였다. 그러나 허가 등 단순 절차 외에는 실체법이든 절차법이든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고, 대개는 법에 관한 대화를 피하려는 인상까지 주었다. 필자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제2경제의 절대적 우선 순위가 어떻고, 국가 조직의 복잡성이 어떻고 등등 구체적인 분쟁의 잠재적 원인을 거론하고야 비로소 북한 사람들에게 계약 개념이 없다는 점을 푸념하며, 수출을 위하여 선적 대기 중인 물건을 보위부에서 일방적으로 빼앗아감으로써 계약이 파기된 경우 등 실례를 대개는 남의 일로서 돌려주었다. 그러나 그 분쟁이 어떻게 해결되었으며 재판을 통해 해결한 경험이 있는지 물으면, 지금까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사례는 자기가 아는 한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북한 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시비곡직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며, 오히려 앞으로의 거래에 나쁜 영향만 주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불안 속에서 어떻게 거래를 계속하며, 거래의 안전을 기할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하면 이는 영업 상의 비밀로서 말해줄 수 없다고 한다. 심지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간에도 이에 관해서는 대화가 없다고 한다. 단 한 사람 해외 동포로부터 비교적 솔직한 답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거래 안전을 보장받는 지름길은 최고 권력자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거래선을 찾는 일이라는 지극히 비법률적인 것이었다. 어찌 허탈하고 당혹스럽지 않겠는가. 오랜 분단에도 불구하고 법은 법이고 실체는 실체라는 사고 방식만은 아직도 공통점으로 남아 있는 것을 하나의 위안(?)으로 삼을 수나 있을까? 아무튼 이렇게 하여 영업상 비밀이라는 것의 윤곽은 파악했지만 그 실체는 끝내 알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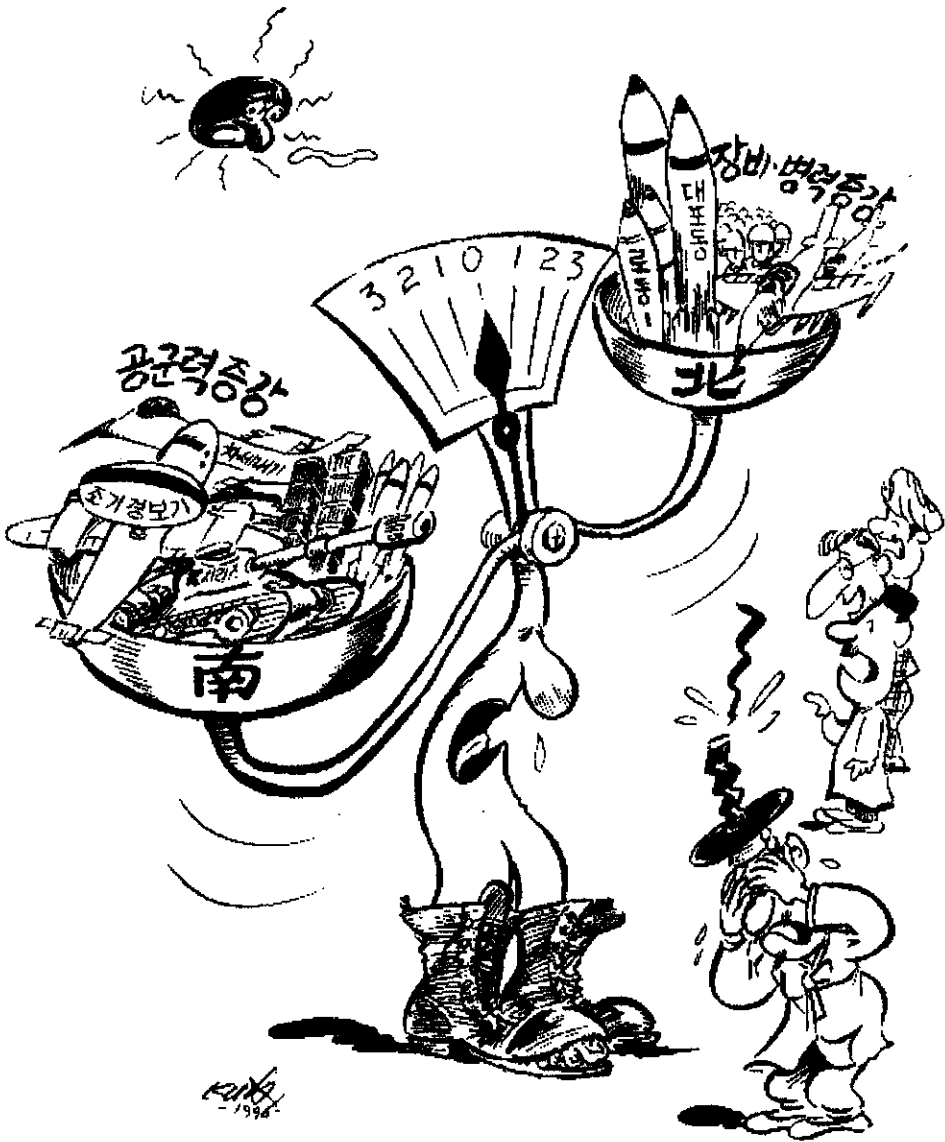
법의 통일

통일은 우리의 염원이다. 그러나 우리가 휴전선을 없애고 하나의 대통령을 갖는 것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단일체를 이루더라도 여타의 이질적 요소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통일이 아니며, 잔존하는 이질적 요소로 인하여 통일이 오히려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통일 준비도 정치적·경제적(통일 비용) 관점에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 가운데서도 법의 통일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삶의 터전인 사회가 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따라서 법이 통

일되지 않고는 사람 사이의 관계 즉, 사회가 평화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의 통일은 실정법을 인위적으로 일치시키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실질적인 법의 통일은 법 의식까지 동질화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그런데 법 의식의 변화란 실정법처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통일 후의 변화된 사회상과 그를 규율할 법체계를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 의식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통일 후의 사회와 법을 설정하는 데는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고 정치가도 그의 큰 목소리로 한 몫할지 모르지만, 법 의식의 통일, 따라서 진정한 통일의 성취는 전적으로 일반 서민의 몫이며 의무이기도 하다. 統

〈漫評〉 23



“경쟁적 軍備增強 어디까지...?”